



지금 집주인이 퇴거시킬 수 있는 사유는 불과 몇 가지뿐입니다

2021년 6월 30일까지 연방 및 주 퇴거 명령에 따라 COVID-19 관련 이유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퇴거 당할 수 없습니다.

그러나 보건, 안전, 또는 재산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*

임대료를 낼 책임은 여전히 귀하에게 있습니다. 내지 않으면, 나중에 많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!

* 본 연방 명령은 집주인이 이사 오거나 팔기 위해 귀하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할 가능성이 큽니다.

임대료 전체를 낼 수 없다면, 집주인은 합리적인 결제 방식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
집주인이 퇴거시키려고 한다면, 즉시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십시오.

King 카운티 내에서는 Housing Justice Project에 (253) 234-4204번으로 전화해주십시오.

그 외 Washington 카운티에서는 NJP의 CLEAR Hotline에 (888) 201-1014번으로 연락해주십시오. 주중 오전 9:15~오후 12:15 운영합니다.

온라인 신청: [CLEAR\(클리어\)*온라인](http://CLEAR(클리어)*온라인)
nwjustice.org/get-legal-help

www.WashingtonLawHelp.org에 방문하면 집주인에게 보내는 서신 견본 및 더 많은 무료 법률 정보, 양식 및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